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 운영세칙

공업진흥청에서는 공업발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을 1993년 5월 21일자(공업진흥청 고시 제 93-164호)로 제정하였는바 이에 본지에서도 지난 6월호에 상기 요령을 게재하였습니다. 금번호에는 운영세칙이 규정되어 게재하오니 업계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 집 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공업진흥청 고시 제93-164호)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부 운영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 원 회

제1절 기술평가위원회

제2조(구성) ①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상 20인이내로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진에 있는 자.
 4. 기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립공업기술원장이 인정한 자.
- ②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등에서 해당기술 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국립공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
-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국립공업기술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정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위원장 유고시는 국립공업기술원 관리부장이 대행한다.

⑦위원회 위원이 일신상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공업기술원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간사) ①간사는 기술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 작성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동 세칙 13조의 예비심의 회부된 신청내용을 종합평가 하고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종합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1을 심의한다.

1. 신기술에 관한 인증 및 인증의 취소.
2. 신기술의 표시사항.
3. 기타 신기술에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회의소집등) ①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기술평가실무위원회

제6조(구성) ①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내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기계, 전기(전자, 정보, 통신포함), 금속, 광산, 토건, 일용품, 섬유, 화학, 농업, 의료기, 수송기계, 조선, 항공의 13개 기술분야로 구성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5년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진에 있는 자.
4. 기타 제1항의 제1호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립공업기술원장이 인정한 자.

②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등에서 해당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국립공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국립공업기술원 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정과 담당연구관을 간사로 한다.

⑥위원장 유고시는 국립공업기술원 인정과장이 대행한다.

⑦위원회 위원이 일신상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공업기술원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중 4인이내를 선발하여 기술평가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현지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간사는 기술평가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 작성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현지평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기능) ①위원회는 동세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기술평가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1을 예비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1. 기술평가신청 서류검토.
2. 기술평가에 관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방법결정, 시료의 크기사항.
3. 제품의 평가.
4. 현지평가결과 타당성 검토.
5. 규격안 심의
6. 기술평가위원회 회의안건 작성등.

제9조(회의소집등) ①위원회 회의는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3장 기술 평가

제10조(위원회 회부) ①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평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립공업기술원 관리부 인정과는 다음 각호1의 업무를 검토한다.

1. 신청된 상품의 형식승인, 특허등 각종관련 법규사항 확인.
2. 신청된 상품의 관련규격 확인.
3. 개발화하여 시제품 단계 또는 상품화 한 지 2년이내의 제품 및 기술의 확인.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평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실무위원회에 회부한다. 동요령의 제9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보완할 수 있다.

제11조(시험분석) ①실무위원장은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 별표 1의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동세칙 18조의 사후관리 경우도 또한 같다.

②상품이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현장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의뢰는 시험분석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동촉진요령 별표 1의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분석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공업기술원에서 시험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현지평가등) ①현지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자의 의견을 부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팀은 현지평가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 실무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시험분석 및 현지평가 결과에 대한 예비심의를 한다.

제13조(종합평가) 기술평가위원회는 예비심의한 내용을 종합평가를 한다.

제14조(기술평가결과 통보) ①공업진흥청장은 기술평가위원으로부터 기술평가결과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사업화 자금지원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결과 처분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표시) ①제조자는 사업화에 성공한 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요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표시상품의 제조공장명.
3. 표시상품의 판매장소 및 판매인.
4. 신청사유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7조(경비부담)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요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분석 소요경비는 동요령 별표 1의 해당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장 사 후 관 리

제18조(사후관리) ①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1의 경우 한하여 년1회 실시한다.

1. 사업화가 완료된 후 시중 유통상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2.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9조(처분) ①동세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개선명령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평가를 받은 업체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시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가. 동요령 제8조(표시)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 나. 표시상품의 사후관리결과 규격에 미달

되었으나 그 사항이 경결함으로 쉽게 시정이 가능한 경우.

2. 표시취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기일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 나. 표시상품의 사후관리 결과 규격미달이 중결함 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처분을 받은 업체와 사업화 자금지원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규격안 제출) ①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요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별표1의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시험분석평가 완료후 1개월 이내에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안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에 의거 규격안을 기술평가실무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규격안의 심의) ①기술평가실무위원장은 동세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회부된 규격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①국립공업기술원장은 기술평가를 위한 각종 회의 참석자 및 위원에게 공업표준심의회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동세칙 제12조에 따른 현지평가자에게는 기술지도위원회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준수사항) 기술평가실시기관 및 기술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 위원은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술평가실시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2. 기술평가실시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누설 등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2호 서식]

현 지 평 가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의 건
상 품 개 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간부의 열의 ○ 상품개발의 독창성 ○ 상품의 기술수준 ○ 상품개발 또는 개량을 위한 투자비율 ○ 상품의 파급효과 		
제 조 공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의 기술수준 ○ 제조공정의 안정성 ○ 제조공정의 효율성 		
사 업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고부가가치 정도 ○ 수입대체 효과 ○ 향후 성장 가능성 		

○ 세부평가지침

- 각 세부평가 항목별(착안사항)로 수준을 평가하되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미실시)의 5등급으로 구분평가하고(평가등급간의 격차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평가항목별로의견을 기술한 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함.
- 의견란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함.